

첨부: 판매서류 1지.

(제2안)

수신: 전설부 장관 (도/시/군/자치구/시청)

제 목: 같 음

1. 우리 판매 도/시/군/자치구 (국/군)에 대하여 별첨서류이
별첨서류가 있음이 보고합니다.

첨부: 리본 색종이 2장 각 1부.

(제3안)

수신: 총무처 장관

제 목: 판매계약 의뢰.

1. 다음과 같이 판매계약 의뢰합니다.



가. 계약구분: 24.

나. 계약대상: 도/시/군/자치구 (국/군) 별첨서류.

다. 납의시기: 도/시/군/자치구 제12조

라. 계약내용: 별첨 24문.

첨부: 리본 색종이 2부.

(제4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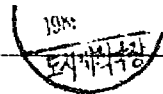
수신: 행정안전부 장관 (도/시/군/자치구/시청)

제목: 같음

1. 도장 20110~2878호 (89. 4. 13)가 편지임.

2. 우체국 양봉봉지 양봉봉지 2장 밑에 도시에릭시청 (국외) 변경
장리 연락 사람에게 발령과 같이 고지되었기 통보하여도
반장이 뜻 없이 되어 통보한 자라신은 도시에릭업무 수행에 장애
있도록 함.

첨부: 이문 새빛 도면 각 1부.



(제 5안)

수신: 서울특별시 도시에릭시청 (관리마장)

제목: 같음

1. 판리 25423~54호 (89. 1. 18)와 349호 (89. 4. 18)가 편지
입니다.

2. 우체국 편지 우체국 도시에릭시청 (국외)를 발령과 같이
변경장리 하시기 통보하여 업무에 장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문 새빛 도면 각 1부.

(제 6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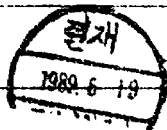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 341

3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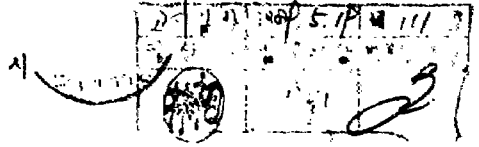
제목: 같음

1. 우리 안에 드디어 희망 (희망)이 나타나
같이 되어서는 흥분해서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고시문 서분꽃 드디어 각 1부 끝

수신처: 드디어 희망. 희망.



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1.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항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5.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m ²)	비 고
기정	학 교	영등포구 양평동 245일대	4,990	봉영여중이적지
변경	"	"	0	

나. 도면 : 영등포구청 비치도면과 같음. 끝.

위치도

1:3000



도시계획하리
A=4,970m²

양평동 2가

문래동 6가

문래동 3가

문래동 2가

354A

'89. 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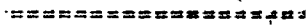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

=====

(89년 제3차 본회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의 개 회 상 황



- 일시 : 8월 25, 15:00 - 18:00
- 장소 : 소회의실
- 참석 : 21명, 16명

주최위원	위원장	윤 백영	위원	이 광노
	위원	안 여배	"	김 경동
		오 희영	"	안 범수
		최 의소	"	도 철응
		김 흥구	"	박 우서
		김 일	"	김 영수
		전 식	"	강 덕기
		전 중	"	이 등
참석위원	위원	전 찬	위원	김 대중
		상 호	"	임 철순
		정 호		

참석 : 서기장, 김찬 이종재, 도시계획과장 변영진,
 도시계획과장 김계병, 재개발과장 박명화,
 주택개발과장 김갑, 시설계획 2계장 김영환,
 환경계획과장 김철.

제 8안	서문역 - 서대문 제3구역 제2지구 건축 계획 변경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미군동 219일대 · 면적을 39 - 41 → 34 - 35% · 용적을 777 - 816 → 639 - 669% · 층 수 20/4 - 19/4 	가	결
제 9안	주백개량재개발(상도제5구역) 구역 결정 및 공원변경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구 상도동 121번지 일대 · 구역결정 25,340m² · 공원변경결정 (감 2,030m²) 497,502 → 495,472m² 	가	결
제10안	학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구 혜화동 90 - 3 · 61,419m²(가톨릭신학대) 	가	결
제11안	학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냉천동 31 · 24,360m²(감리교신학대) 	가	결
제12안	학교변경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구 흑석동 44(중앙대) · 138,943 → 137,242m² 	가	결

제13안	학교변경 결정 및 도로결정	보 ·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 자양동 674(광양중교) · 40,248 → 31,697m² · 도로결정 L=6m, L=158m 	
제14안	학교 변경 결정	가 ·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5일대 · 4,990.7 → 0(매제) · , 봉염여중 이적기 	
제15안	학교결정	가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 고척동 76-193 10,280m² (고산국교) 	
제16안	학교, 공용의청사, 도로 결정 및 운동장 가스공급설비 변경 결정	가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 고척동 63-6 · 운동장 96,640 → 59,020m² · 학 교 26,570m²(중.국교) · 공용의청사 5,190m²(구로세무소) · 도 로 B=15m, L=570m · 가스공급설비 11,435 → 10,503m² 	

시설계획과계장 (이하계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미결정된 기존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치 및 현황설명'

위원장 길게뛰어 나온곳(산2의 16일대)도 학교로 결정하는 것 인니까.

계 장 원태 학교 소유토지인데 이번에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용지는 제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공원업의 본비된 토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김영수위원 학교소유 토지인데 공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학교소유 공원용지는 공원을 예제해서 학교용지로 하면 어때합니까

김영수위원 학교용지에도 연결된 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하는것인데 가결하면 어떨까요

일 등 동의(가결)

제1안 : 학교결정

○ 서대문구 냉천동 31.

24,360㎡²(감리교 신학대)

계 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미결정된 기존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는것이며 교지 기존면적에 적합합니다.

'위치 및 현황설명'

위원장 기존학교인데 왜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계장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1905년에 설립되었으나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미결정 된것입니다.

위원장 지금까지 시설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계장 대학설치 기준령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이 모...에서
감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가결하면 어떨까요

일동 동의(가결)

제2안 : 학교변경결정

○ 동작구 옥석동 44 (중앙대)

138,943 → 137,242m²

계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학교부지와 구분된 옥석동 200-94구거는 ...로 활용되고

옥석동 221-1(15m도로)은 기포장되어 ...에 ...

불합리한 시설을 조정해서 학교용지에서 ...

·위치 및 현황설명·

위원장 불합리한 시설을 조성 하는것인데 가결하면 ...

일동 동의(가결)

제3안 : 학교변경결정 및 도로결정

○ 성동구 자양동 674(광양중고)

40,248 → 31,697m²

도로결정 L=6 B=158m

계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학교개설후 남은 자부터땅이 ...

걸쳐 10여개소를 선정 작년에 시교위와 협의해서 ...

추진계획이 없는 토지보 교지 기준에 적합한 것 ...

정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해제 되었고 나머지를 ...

·위치 및 현황설명·

위원장 해제하게 되면 강변도트가 넘어 집니까

김영수위원 넘어 지게 됩니다

위원장 강변도트옆에 있는 선이 무엇입니까

계 장 4종 미관지구 선입니다

강덕기위원 해제 대상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계 장 개인소유지이며 유적지가 있다하여 조사한바 기존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당초 복원계획이 있었는데 가치가 없다해서 제외된것이냐 개인소유지이기
때문에 시교위 통보 근거에 의해 해제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것
입니다.

김경동위원 좌투리 땅이 된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계 장 2개 학교를 결정했는데 개설후 남은 땅입니다

오희영위원 지금은 고지면적에 적합하지만 앞으로 학교 확장 필요가 있을것을
대비할때는 해제하면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그러냐
현재의 기준에 맞는다고 해제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강정은 못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확장이 필요할것인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어렵다 교위와 협의했는데
확장 계획이 없으므로 해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여흥구위원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주변이 완전해결 된다는 데는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시교위의 하폐일위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재정이 모자라 수용을 못하고 민원인은 해제를 거부해서 포기하겠다는
의견 같은데 해제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결정이 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토지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해제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영택의원 토지가 밭땅이나 텃밭인가

계 장 11,000평 정도됩니다

여흥구의원 현재 2개 학교를 합해서 8,000여평입니다

이광노의원 대외부동산은 토지확보가 간단하다해서 취득세 소액화한 미니취득세
 한다는데 이는 가능한 면적이라고 합니다

오위영의원 영업을 이용하면 대영장 없이도 학교가 가능하고 대영장용 확보
 할때도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데 좌 대영장용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김경동의원 국민학교 수요를 검토해서 조치하면 어떨까요

김영수의원 그것은 이미 교외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따위를 지을것은 입주자 동영장이 없어 학교 텃밭이나 강변로를
 사용하도록 요구할것이 예상되고 여흥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시 교외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재검토 해보도록 보류하면 어떨까요

일 방 동의(보류)

제4안 : 학교면적결정

○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5일대

4,990.7 > 0 (해제)

봉영여중 이적지

계 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양평동 노파리 30m 도로변에 목동신시가지 개발시 이전해간 후적
 지로서 영등포 관내에 학교부지 3개소가 추보확보되어 있으며
 기존면적이 부족할뿐 아니라 소음공해지역이어서 학교부지를 확정일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 및 현황설명’

위원장 이땅을 택도해야 학교신축비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교이전지에는 아파트 건축을 앉겠다고 발표한적이 있는데 이전지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아파트나 삼가 건축은 근반하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도심지의 이전지에 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심만 극한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용지 해제를 앉으면 이전이 불가합니다

계 장 이전은 이미 되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인데 처분허가가 된것입니다

위원장 학교용지 해제를 의결하고 나면 다른지역에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반합니다.

여흥구위원 지가상승에 상응하는 구상을 보고 해제결정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시교위의 하택일위원의 의견은 어떤지요

하택일위원 인근에 무동지역 시설이 여유가 있고 기존면적의 축소가 어렵워 인접에 4,000여평 확보해서 옮기면서 처분하는것이며 이전지는 이미 전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매각후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영복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후의 문제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흥구위원 영동포지역은 환경이 매우 나빠서 서울의 사막이라 할정도입니다

오영일위원 교육시설이 이전해가면 해제하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교육시설이 이전해가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공원이 되는것과는 영향이 다른데, 지금시점에서 해제는 불가피 하다고 보며 그러나 앞으로의 사용 문제도 검토 되어야 하며 도서관 같은것이 지역 주민에게 좋을것 같군요

앞으로의 활용 문제도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공단의 근로복지 시설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광노위원 그 문제는 시당국에 맡기고 해제는 불가피 하며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
매입하면 좋겠군요

위원장 일단 해제에는 동의하시는데 가결하면 어떨까요

일 동 동의(가결)

제15안 : 학교결정

○ 구로구 고척동 76-193 10,280m²(고산국교)

계 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과대 과밀 학급 및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남부교육구청의 요청으로
학교용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 및 현황설명'

여흥구위원 소음방지 대책은 도포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겠습니다.

계 장 방음벽은 설치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노위원 상임기획단 의견에 부적합한 토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어떤가요

상임기획단 건너편에 운동장이 있는데 입인된 위치는 소음공해와 지가가 높아
부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안이 운동장에 시설을 결정하는 것인데 보시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일 동 동의(제16안과 함께 가결됨)

제16안 : 학교, 공용의청사, 도포결정 및 운동장 가스공급 설비 변경결정

○ 구로구 고척동 63-6

· 운동장 96,640 → 59,020m²

· 학교 26,570m²(중, 고교)

· 공용의청사 5,190m²(구토세무소)

· 도로 B=15m L=570m

· 가스공급설비 11,435 → 10,503m²

- 계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운동장 결정후 장기 미집행 지구인데 여기에 공영의청사와 학교 및
가스공급설비를 변경결정 하는것 입니다.
'위치 및 현황설명'
- 위원장 중고등학교는 언제 건설됩니까
- 계장 교외 요청으로 학교용지로 결정만 하여 주면 사용은 교외에서.
하게 됩니다.
- 오위원 운동장에 국민학교 시설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위원 시민이 사용할 운동장을 축소 하는것은 부적당 하다고 보여집니다
- 계장 안양천 교수부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 김위원 오래된 운동장 결정시설인데 활용할수 있을만큼 남기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위원 제5인의 국민학교 결정지에는 수영장 같은것을 시설하고 운동장
일부를 국민학교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 김위원 국민학교 이므로 취학아동관계단지 도 행정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안위원 운동장의 대지모양으로 보아 운동장을 할애할 경우 모양이 적합하지
않군요
- 위원장 면장때부터 운동장을 많이 남겨 두는것도 좋지만 자니교우 관계
인데 학교를 공해, 소음등이 심한곳에 결정하면 불합리 하다고 보며
집니다.
혹시 시교위에서 대지를 매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하위원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그쪽이 있으며 보지는 결정후 매입할
예정입니다
- 이위원 육교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국민학생들이 데 짚가가운 곳에 학교를 뒀으면 할것같은요
 제15안을 포함해서 가겠하고 국민학교 단체는 시교의에서 직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요
 임 동 동의(가겠)
 제17안 : 도로변경검정
 .o 서초구 양재동 20-4
 L=12m (가각전체)
 강남대로 상행선 차량의 우회전시 충돌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가각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위치 및 현황설명'
 위원장 사유지입니까
 계 장 체비지입니다
 위원장 체비지 이면 전체를 가각으로 만들지 일부만 남겨 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인식위원 중요한 가각도 아닌데 전체하는것 보다 필요한면적만 하는것도
 타당 하다고 봅니다.
 도철용위원 몇m 도로입니까
 계 장 8m 도로입니다
 김인식위원 건물은 지을려고 가각을 전체 해답하는 요구가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가각 일부를 후지로 조성하면서 계획선용 자부는 것인데 체비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계 장 주거지역내 대지이기 때문에 후지란 후지 위험수준 도로양지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가결하면 어떨까요